

대학자체평가위원회규정

제정 2000. 4. 21. (규칙 제102호)

개정 2009. 9. 7. (규칙 제269호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자체종합평가업무를 수행할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학자체평가위원회)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도입에 따라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, 연구, 사회봉사, 교수, 시설설비, 재정경영실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·평가와 동시에 대학문제의 진단·규명 그리고 그 해결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평가인정을 받기 위하여 대학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 (구성) 본 위원회에서는 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와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둔다.

제4조 (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조직과 기능) ① 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는 부총장, 대학원장, 교무처장, 학생복지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소장, 중진교수, 재단이사 등 10명 내외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대학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자체평가 실시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및 실행
2. 자체평가 연구를 위한 예산편성 및 재정확보
3. 자체평가 연구수행 결과의 심의, 제출 및 현지방문 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대한 협조
4. 평가결과보고서(대학교육협의회, 대학평가인정위원회)에 제시된 개선방안 수립·실천
5. 전체 대학 구성원들이 자체평가연구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

제5조 (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조직과 기능) ①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, 교육영역, 연구영역, 교수영역, 봉사영역, 재정경영영역, 시설설비영역 등 각 영역별로 전문교수 약간명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임기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③ 대학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자체평가연구 인식의 확산
2. 연구 추진 일정 수립
3. 자체평가연구의 방법 결정
4. 평가영역별로 수집해야 할 자료 목록의 작성
5. 자료 수집의 도구와 수집방법의 결정
6. 수집된 자료의 종합분석 및 평가
7.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집필

제6조 (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7조 (소위원회) 대학자체평가 수행을 돕기위해 소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.

1. 교육목적연구위원회
2. 교육과정연구위원회
3. 교수연구진흥위원회
4. 사회봉사연구위원회
5. 교수지원연구위원회
6. 대학시설연구위원회
7. 대학경영연구위원회
8. 대학재정연구위원회

제8조 (연구보조원 및 간사) 대학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간사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 (각 위원회의 소집)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제10조 (운영비) 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(제102호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269호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